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경정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경정 1명, 경사 2명, 경장 2명, 순경 2명) 및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경위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경찰청에 소방청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소방령 4명)을 증원하면서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27명(경정 17명, 경감 112명, 경위 50명, 경사 46명, 경장 45명, 순경 56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문감정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행정·관리운영직군 정원 18명(7급 3명, 8급 9명, 9급 6명)을 전문경력관(나군 3명, 다군 15명)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하부조직 및 경찰청 소속기관인 서울특별시경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33명(경정 4명, 경감 22명, 경위 46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경찰청의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24. ~ 3.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제10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자치경찰제도 관련 기획 및 조정

7의3.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 사무 총괄

7의4.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의5.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
한 사항

제13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 운영

제47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제6장제4절의 제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소방령 4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1 중 강원도경찰청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경기도북부경찰청란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 중 “강원도경찰청”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
------------	---------

별표 2 중 강원도경찰청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경기도북부경찰청란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	춘천경찰서, 강릉경찰서, 원주경찰서, 동해경찰서, 태백경찰서, 속초경찰서, 삼척경찰서, 영월경찰서, 정선경찰서, 홍천경찰서, 평창경찰서, 횡성경찰서, 고성경찰서, 인제경찰서, 철원경찰서, 화천경찰서, 양구경찰서
----------------	---

별표 4 중 총계 “1,926”을 “1,93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13”을 “1,217”로 하며, 총경 이하 “1,194”를 “1,198”로 하고, 일반직 계 “713”을 “709”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707”을 “685”로, 전문경력관 “3”을 “21”로 하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계 4”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소방

령 4”를 신설한다.

별표 5 중 총계 “134,205”를 “134,199”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787”을 “129,817”로 하며, 총경 이하 “129,688”을 “129,718”로 하고, 일반직 계 “4,396”을 “4,360”으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4,361”을 “4,32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제4절의 제목, 제58조제1항·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경찰청의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과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333명(경정 4명, 경감 22명, 경위 46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7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② -----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u>15. 자치경찰제도 관련 기획 및 조정</u>	<u><삭 제></u>
<u>16.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 사무 총괄</u>	<u><삭 제></u>
<u>17.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8.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u>	<u><삭 제></u>
제8조(경무인사기획관) ① (생략)	제8조(경무인사기획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무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②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 16. (생 략)

제10조(치안상황관리관) ① (생 략)

② 치안상황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1. ~ 4. (생 략)

5.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 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제11조(생활안전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의2.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9. ~ 16. (현행과 같음)

제10조(치안상황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생활안전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자치경찰제도 관련 기획 및 조정

7의3.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 사무 총괄

7의4.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의5.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

8. ~ 16. (생략) 제13조(경비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u><신설></u> 9. ~ 13. (생략) 제47조(경비부) ① (생략)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4절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북부·	<u>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u> 8. ~ 16. (현행과 같음) 제13조(경비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8. (현행과 같음) <u>8의2.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u> 9. ~ 13. (현행과 같음) 제47조(경비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u> ③ (현행과 같음) 제4절 ----- ----- -----
---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 · 도경찰청

제58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기도북부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 · 도경찰청에 공공안전부 · 수사부 · 자치경찰부를 각각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기도북부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 · 도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제58조(하부조직)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강원특별자치도-----

-----.

③ (생략)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략) <u><신설></u>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소방령 4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6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26</u>	<u>1,930</u>	+4
경찰공무원 계	<u>1,213</u>	<u>1,217</u>	+4
·	·	·	
·	·	·	
총경 이하	<u>1,194</u>	<u>1,198</u>	+4
일반직 계	<u>713</u>	<u>709</u>	-4
·	·	·	
·	·	·	
4급 또는 총경 이하	<u>707</u>	<u>685</u>	-22
전문경력관	<u>3</u>	<u>21</u>	+18
<u>소방공무원 계</u>	<u><신 설></u>	<u>4</u>	+4
<u>소방령</u>	<u><신 설></u>	<u>4</u>	+4

[별표 5]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6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4,205</u>	<u>134,199</u>	-6
경찰공무원 계	<u>129,787</u>	<u>129,817</u>	+30
·	·	·	
·	·	·	
총경 이하	<u>129,688</u>	<u>129,718</u>	+30
·	·	·	
·	·	·	
일반직 계	<u>4,396</u>	<u>4,360</u>	-36
·	·	·	
·	·	·	
4급 또는 총경 이하	<u>4,361</u>	<u>4,325</u>	-36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1